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37호 2022. 9. 28.(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2-298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1
광양시 고시 제2022-300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2
광양시 고시 제2022-301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3
광양시 고시 제2022-30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5
광양시 고시 제2022-30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6
광양시 고시 제2022-30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7
광양시 고시 제2022-30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8
광양시 고시 제2022-30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9
광양시 고시 제2022-30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0
광양시 고시 제2022-311호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고시(2차)	11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2-1812호	공시 송달공고	12
광양시 공고 제2022-1845호	광양시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 지정(안) 행정예고	13
광양시 공고 제2022-1854호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6
광양시 공고 제2022-1861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30
광양시 공고 제2022-1880호	공시 송달공고	43

회 관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 797-2323, 행정2713)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 광양시 백운1로 228(태인동)	2022.9.21.	건축물대장 말소 (※상세내역 불임참조)
2	전남 광양시 봉강면 지실길 47-5(지곡리)		
3	전남 광양시 광양읍 남문길 19-1		
4	전남 광양시 옥룡면 대흥1길 75-4		
5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읍성2길 61		
	이 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2388, 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9. 21.

광 양 시 장

광양시 고시 제 2022-300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 광양시 진상명 백학로 442	2022.9.23..	건축물대장 말소
	이 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2388, 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9. 23.

광 양 시 장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28.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의암3길 22(광영동) 외 6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9, 237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9.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 부여 7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1068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의암3길 22 (광영동)	20220928	20200603	사업명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453, 산112-1, 113-1, 산113-1, 113-6, 산113-6, 산114-1, 산115, 산116, 산116-1, 180-7, 452-2, 454, 455, 456, 457, 457-1, 464, 465, 466, 467-1, 1520-2, 1617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로 142	20220928	20090421	법정리명에서 인용
3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179-13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3길 13 (마동)	20220928	20120711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 이라는 옛 지명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4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271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구룡로 370-6	20220928	20081001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하였다는 전설에서 작명
5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770-15	전라남도 광양시 발섬2길 23 (중동)	20220928	20081001	옛 지명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6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1289-2, 1289-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사곡로 298-15	20220928	20081001	법정리명에서 인용
7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186-128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중섬길 19	20220928	20220112	행정리명에서 인용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시청로 33
	성명	광양시장(아동친화도시과)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629외 7필지
	면적	5,279㎡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점용내용		2022년 푸른성장 청소년 대축제 행사
점용기간		2022. 10. 14. ~ 2022. 10. 15.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2-30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광양읍 남등길 6
	성명	광양읍사무소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598 외 4필지
	면적	58.5㎡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점용내용		미세먼지 기상전광판
점용기간		2022. 09. 26. ~ 2026.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광양읍 남등길 6
	성명	광양읍사무소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633 외 1필지
	면적	21.3㎡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점용내용		미세먼지 기상전광판
점용기간		2022. 09. 26. ~ 2026.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2-30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중동로 20
	성명	한국전력공사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555
	면적	0.48㎡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점용내용		콘크리트 전주
점용기간		2022. 09. 27. ~ 2026.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동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중동로 20
	성명	한국전력공사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33
	면적	0.24㎡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점용내용		콘크리트 전주
점용기간		2022. 09. 21. ~ 2026.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2-30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
점용자	주소	광양읍 남등길 6
	성명	광양읍사무소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881-2외 8필지
	면적	131,647㎡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점용내용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점용기간		2022. 10. 4. ~ 2022. 10. 1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고시(2차)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2. 9. 28.

광 양 시 장

1. 고 시 명: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고시(2차)
2. 대 상 지: 광양시 광영동 산58번지 등 24개소 [붙임 참조]
3. 해제사유: 사방사업 시행 완료 및 지반 안정화로 지정목적 달성
4. 해 제 일: 2022년 10월 경 (이의신청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5.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산림소득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소득과(☎061-797-3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구역 조서 1부. 끝.

광양시 공고 제2022 - 18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 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광 양 시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7.(14일간)
3. 공고장소 : 광양시

게시관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처리 알림
 - 나. 처분의 원인 된 사실: 건축물 미존재
 -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처리 알림

말소 건축물대장 현황						소유자 현황	
대지위치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성명(명칭)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28-257	주거	1층	경량 조립식	운수시설	66㎡	대한강재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720-7

라.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광양시 공고 제2022-1845호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광양시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2.

광 양 시 장

광양시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 지정(안) 행정예고

1. 지정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광양시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 지역 : 광양시 전 지역

나. 지정기간 : 2022. 10. 14. ~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다. 예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13. (20일간)

라. 공고방법 : 광양시 홈페이지, 게시판

※ 광양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건축과장)에게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기간 : 2022.9.22. ~ 2022.10.12.(20일간)

라. 보내실 곳 및 연락처

- 우 편 :우57785 /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광양시청) 1층 건축과

- 팩 스 : 061-797-2888

- 전자우편 : dlagudgh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행정예고(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광양시 건축과(전화 061-797-28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의견서 1부. 끝.

광양시 공고 제2022-1854호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제정함에 있어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취지 및 주요 개정사항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광양시장

1.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0.19)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목적,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다. 지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 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22조)
- 사.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광양시 총무과(061-797-224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 제출서식 : 붙임 참고

나. 제출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총무과
- 전자우편 : khk5357@korea.kr
- 팩스 : 061-797-2579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광양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등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
 - 나.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 다. 지역의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유통·홍보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기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와 제19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광양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광양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광양시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광양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광양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

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팀장

-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양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양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나.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20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1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광양시 공고 제2022-1861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3.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1.27.)에 따라 우리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업무 전담 조직 필요
 - 팀 명칭변경에 따른 업무 재조정

3. 주요내용

- 부서 분장사무 조정(별표 1)

부 서 명	주요 분장사무
안 전 총 괄 과	• 팀 명칭변경(통합관제팀 → 중대재해팀)에 따른 업무 조정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22. 9. 23. ~ 9. 26.(3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9. 26.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총무과장, 전화 061-797-2241 FAX 061-797-2579, e-mail: pw08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본청 실·과별 사무분장(제3조제1항 관련)

담당관·과	분 장 사 무
안전총괄과	85 중대재해 예방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
	86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점검 및 안전보건기준 마련
	87 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지도
	88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89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90 중대시민재해 대상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이행사항 확인
	9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
	92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
	93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점검 및 결과 조치
	94 중대재해 비상대응계획 수립
	95 사업장 순회 및 지도점검
	96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
	97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 수립
	98 통합관제센터 보안정책 수립 및 시행
	99 u-도시통합관제센터 단계별 추진계획수립
	100 국가영상정보자원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 운용
	101 부서 CCTV 통합 설치(주정차단속 및 산불감시 CCTV 제외)
	102 부서 CCTV 통합 관리·운영(전기 및 통신사용료 포함)
	103 CCTV 운영협의회 운영
	104 CCTV 통합기반 인프라 구축
	105 CCTV 통합관제센터 및 관제시스템 운영
	106 CCTV 관련 업무별 민원처리 및 상황전파
	107 CCTV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108 유관기관 관제운영 업무협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본청 실·과별 사무분장(제3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담당관·과</th>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80%;">분 장 사 무</th> </tr> </thead> <tbody> <tr> <td>안전총괄과</td> <td>85</td> <td>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 수립</td> </tr> <tr> <td></td> <td>86</td> <td>통합관제센터 보안정책 수립 및 시행</td> </tr> <tr> <td></td> <td>87</td> <td>u-도시통합관제센터 단계별 추진계획수립</td> </tr> <tr> <td></td> <td>88</td> <td>국가영상정보자원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 운용</td> </tr> <tr> <td></td> <td>89</td> <td>부서 CCTV 통합 설치(주정차단속 및 산불감시 CCTV 제외)</td> </tr> <tr> <td></td> <td>90</td> <td>부서 CCTV 통합 관리· 운영(전기 및 통신사용료 포함)</td> </tr> <tr> <td></td> <td>91</td> <td>CCTV 운영협의회 운영</td> </tr> <tr> <td></td> <td>92</td> <td>CCTV 통합기반 인프라 구축</td> </tr> <tr> <td></td> <td>93</td> <td>CCTV 통합관제센터 및 관제시스템 운영</td> </tr> <tr> <td></td> <td>94</td> <td>CCTV 관련 업무별 민원처리 및 상황전파</td> </tr> <tr> <td></td> <td>95</td> <td>CCTV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관리</td> </tr> <tr> <td></td> <td>96</td> <td>유관기관 관제운영 업무협의</td> </tr> </tbody> </table>	담당관·과		분 장 사 무	안전총괄과	85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 수립		86	통합관제센터 보안정책 수립 및 시행		87	u-도시통합관제센터 단계별 추진계획수립		88	국가영상정보자원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 운용		89	부서 CCTV 통합 설치(주정차단속 및 산불감시 CCTV 제외)		90	부서 CCTV 통합 관리· 운영(전기 및 통신사용료 포함)		91	CCTV 운영협의회 운영		92	CCTV 통합기반 인프라 구축		93	CCTV 통합관제센터 및 관제시스템 운영		94	CCTV 관련 업무별 민원처리 및 상황전파		95	CCTV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96	유관기관 관제운영 업무협의	<p>[별표 1] 본청 실·과별 사무분장(제3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담당관·과</th>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80%;">분 장 사 무</th> </tr> </thead> <tbody> <tr> <td>안전총괄과</td> <td>85</td> <td>중대재해 예방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td> </tr> <tr> <td></td> <td>86</td> <td>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점검 및 안전보건기준 마련</td> </tr> <tr> <td></td> <td>87</td> <td>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지도</td> </tr> <tr> <td></td> <td>88</td> <td>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td> </tr> <tr> <td></td> <td>89</td> <td>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td> </tr> <tr> <td></td> <td>90</td> <td>중대시민재해 대상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이행사항 확인</td> </tr> <tr> <td></td> <td>91</td> <td>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td> </tr> <tr> <td></td> <td>92</td> <td>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td> </tr> <tr> <td></td> <td>93</td> <td>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점검 및 결과 조치</td> </tr> <tr> <td></td> <td>94</td> <td>중대재해 비상대응계획 수립</td> </tr> <tr> <td></td> <td>95</td> <td>사업장 순회 및 지도점검</td> </tr> <tr> <td></td> <td>96</td> <td>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td> </tr> <tr> <td></td> <td>97</td> <td>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 수립</td> </tr> <tr> <td></td> <td>98</td> <td>통합관제센터 보안정책 수립 및 시행</td> </tr> <tr> <td></td> <td>99</td> <td>u-도시통합관제센터 단계별 추진계획수립</td> </tr> <tr> <td></td> <td>100</td> <td>국가영상정보자원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 운용</td> </tr> <tr> <td></td> <td>101</td> <td>부서 CCTV 통합 설치(주정차단속 및 산불감시 CCTV 제외)</td> </tr> <tr> <td></td> <td>102</td> <td>부서 CCTV 통합 관리· 운영(전기 및 통신사용료 포함)</td> </tr> <tr> <td></td> <td>103</td> <td>CCTV 운영협의회 운영</td> </tr> <tr> <td></td> <td>104</td> <td>CCTV 통합기반 인프라 구축</td> </tr> <tr> <td></td> <td>105</td> <td>CCTV 통합관제센터 및 관제시스템 운영</td> </tr> <tr> <td></td> <td>106</td> <td>CCTV 관련 업무별 민원처리 및 상황전파</td> </tr> <tr> <td></td> <td>107</td> <td>CCTV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관리</td> </tr> <tr> <td></td> <td>108</td> <td>유관기관 관제운영 업무협의</td> </tr> </tbody> </table>	담당관·과		분 장 사 무	안전총괄과	85	중대재해 예방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		86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점검 및 안전보건기준 마련		87	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지도		88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89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90	중대시민재해 대상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이행사항 확인		9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		92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		93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점검 및 결과 조치		94	중대재해 비상대응계획 수립		95	사업장 순회 및 지도점검		96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		97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 수립		98	통합관제센터 보안정책 수립 및 시행		99	u-도시통합관제센터 단계별 추진계획수립		100	국가영상정보자원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 운용		101	부서 CCTV 통합 설치(주정차단속 및 산불감시 CCTV 제외)		102	부서 CCTV 통합 관리· 운영(전기 및 통신사용료 포함)		103	CCTV 운영협의회 운영		104	CCTV 통합기반 인프라 구축		105	CCTV 통합관제센터 및 관제시스템 운영		106	CCTV 관련 업무별 민원처리 및 상황전파		107	CCTV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108	유관기관 관제운영 업무협의
담당관·과		분 장 사 무																																																																																																																	
안전총괄과	85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 수립																																																																																																																	
	86	통합관제센터 보안정책 수립 및 시행																																																																																																																	
	87	u-도시통합관제센터 단계별 추진계획수립																																																																																																																	
	88	국가영상정보자원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 운용																																																																																																																	
	89	부서 CCTV 통합 설치(주정차단속 및 산불감시 CCTV 제외)																																																																																																																	
	90	부서 CCTV 통합 관리· 운영(전기 및 통신사용료 포함)																																																																																																																	
	91	CCTV 운영협의회 운영																																																																																																																	
	92	CCTV 통합기반 인프라 구축																																																																																																																	
	93	CCTV 통합관제센터 및 관제시스템 운영																																																																																																																	
	94	CCTV 관련 업무별 민원처리 및 상황전파																																																																																																																	
	95	CCTV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96	유관기관 관제운영 업무협의																																																																																																																	
담당관·과		분 장 사 무																																																																																																																	
안전총괄과	85	중대재해 예방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																																																																																																																	
	86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점검 및 안전보건기준 마련																																																																																																																	
	87	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지도																																																																																																																	
	88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89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90	중대시민재해 대상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이행사항 확인																																																																																																																	
	9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																																																																																																																	
	92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																																																																																																																	
	93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점검 및 결과 조치																																																																																																																	
	94	중대재해 비상대응계획 수립																																																																																																																	
	95	사업장 순회 및 지도점검																																																																																																																	
	96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																																																																																																																	
	97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 수립																																																																																																																	
	98	통합관제센터 보안정책 수립 및 시행																																																																																																																	
	99	u-도시통합관제센터 단계별 추진계획수립																																																																																																																	
	100	국가영상정보자원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 운용																																																																																																																	
	101	부서 CCTV 통합 설치(주정차단속 및 산불감시 CCTV 제외)																																																																																																																	
	102	부서 CCTV 통합 관리· 운영(전기 및 통신사용료 포함)																																																																																																																	
	103	CCTV 운영협의회 운영																																																																																																																	
	104	CCTV 통합기반 인프라 구축																																																																																																																	
	105	CCTV 통합관제센터 및 관제시스템 운영																																																																																																																	
	106	CCTV 관련 업무별 민원처리 및 상황전파																																																																																																																	
	107	CCTV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108	유관기관 관제운영 업무협의																																																																																																																	

광양시 공고 제2022-1861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3.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2. 제안이유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1.27.)에 따라 우리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업무 전담 조직 필요
 - 팀 명칭변경에 따른 업무 재조정

3. 주요내용

- 행정기구 팀 명칭변경(별표 1)

기구별	개편내용	내 용
팀	명칭변경 (1)	• 통합관제팀 → 중대재해팀(안전총괄과)

- 부서(팀) 분장사무 조정(별표 2)

4. 개정 규정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22. 9. 23. ~ 9. 26.(3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9. 26.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총무과장, 전화 061-797-2241 FAX 061-797-2579, e-mail: pw08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팀 명칭

구 분	부 서	팀 명 칭	비고	
본 청	기 획 예 산 실	기획, 예산, 국도비, 평가분석, 의회법무		
	전 략 정 책 실	인구정책, 청년정책, 신산업		
	감 사 실	감사, 조사, 설계심사		
	홍 보 소 통 실	홍보, 소통, 미디어		
	총무국	총 무 과	서무, 시정, 인사, 문서통계, 후생	
		세 정 과	세정, 부과, 재산세, 지방소득세	
		징 수 과	지방세징수, 세외수입, 과표, 세무조사	
		회 계 과	경리, 계약관리, 재산관리, 청사관리, 공용차량관리	
		민 원 지 적 과	민원, 지적관리, 지가조사,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 차량등록	
		정 보 통 신 과	정보기획, 행정정보, 스마트도시, 통신, 공간정보	
	경제복지국	지 역 경 제 과	지역경제, 기업지원, 에너지관리, 시장관리, 노사협력	
		투 자 일 자 리 과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철 강 항 만 과	제철항만, 국제협력, 해양수산, 수산유통	
		주 민 복 지 과	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관리, 자원봉사	
		노 인 장 애 인 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관광문화 환경국	관 광 과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관광시설, 관광단지	
		문 화 예 술 과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 문예회관	
		체 육 과	체육진흥, 체육시설, 체육시설운영1, 체육시설운영2	
		환 경 과	환경정책, 환경지도, 기후환경, 수질환경	
		자 원 순 환 과	청소행정, 자원재활용, 자원시설, 생활환경	
	안전도시국	안 전 총 괄 과	안전기획, 사회재난, 자연재난, 하천관리, 중대재해	
		건 설 과	건설행정, 농촌활력, 농촌개발, 농업기반	
		도 시 재 생 과	도시행정, 도시계획, 재생전략, 재생시설, 도시경관	
		도 로 과	도로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교 통 과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 교통관리	
		건 축 과	건축행정, 공동주택허가, 공동주택관리, 건축지도	
		허 가 과	건축허가1, 건축허가2, 산지농지전용, 개발행위	

구분	부서	담당명칭	비고	
직속기관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 의약, 감염병대응, 감염병관리 재택치료관리	
		건강증진과	건강증진, 정신건강, 치매관리	
		통합보건과	중마보건, 출산지원, 광영건강, 골약건강	
		식품위생과	위생민원, 위생지도, 음식문화	
		도시보건지소	도시보건, 방문보건, 진료소지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정, 친환경농업, 축산, 학교급식	
		농산물마케팅과	마케팅전략, 농식품가공, 생활자원	
		매실원예과	매실정책, 원예특작, 유통지원	
		산림소득과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소득	
		기술보급과	기술지원, 미래농업, 식량작물, 도시농업	
사업소	교육보육센터	교육보육과	교육지원, 보육, 평생학습, 육아지원센터	
		아동친화도시과	아동친화, 아동보호, 청소년, 드림스타트, 테마파크	
		여성가족과	여성친화, 가족돌봄, 여성일자리, 여성문화센터	
		도서관운영과	도서관지원, 중앙도서관, 중마도서관, 희망도서관, 용강도서관, 금호도서관	
	물관리센터	상수도과	상수도행정, 급수, 시설, 용강정수장, 마동정수장	
		하수도과	하수행정, 하수시설, 하수관리	
		하수처리과	중앙하수, 광양하수, 진월하수, 광영하수, 태인폐수	
		생활폐기물과	관리, 자원화	
	산단녹지센터	택지과	택지행정, 택지개발, 택지지원	
		산단과	산단행정, 국가산단, 일반산단	
		공원과	공원행정, 공원조성, 공원관리1, 공원관리2	
		녹지과	녹지행정, 도시녹화, 도시정원, 가로수	
		시설관리과	시설관리, 가로등, 경관조명, 기반시설	
		휴양림사업소	휴양림관리, 휴양림시설	
	읍면동	광양읍	총무과	총무, 주민생활지원, 맞춤형복지
			주민과	민원, 환경관리
개발과			산업, 건설도시	
읍면동		봉곡면	총무, 주민생활지원, 맞춤형복지, 산업	
		옥곡면	총무, 주민생활지원, 맞춤형복지, 산업	
		진상면	총무, 주민생활지원, 맞춤형복지, 산업	
		진월면	총무, 주민생활지원, 맞춤형복지, 산업	
		다압면	총무, 주민생활지원, 맞춤형복지, 산업	
		골약동	총무, 맞춤형복지	
		중마동	총무, 주민생활지원, 맞춤형복지, 민원, 환경관리	
		광영동	총무, 맞춤형복지	
		태인동	총무, 맞춤형복지	
		금호동	총무, 맞춤형복지	

[별표 2]

팀별 분장사무(제3조 관련)

담당관·과	담당	분 장 사 무	
안전총괄과	중대재해	81.	중대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운영
		8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총괄
		83.	사업장 위험성 평가
		8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85.	중대재해 예방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
		86.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점검 및 안전·보건기준 마련
		87.	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지도
		88.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89.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90.	중대시민재해 대상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이행사항 확인
		9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
		92.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
		93.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점검 및 결과 조치
		94.	중대재해 비상대응계획 수립
		95.	사업장 순회 및 지도점검
		96.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
		97.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 수립
		98.	통합관제센터 보안정책 수립 및 시행
99.	u-도시통합관제센터 단계별 추진계획수립		
100.	국가영상정보자원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 운용		
101.	부서 CCTV 통합 설치(주정차단속 및 산불감시 CCTV 제외)		
102.	부서 CCTV 통합 관리·운영(전기 및 통신사용료 포함)		
103.	CCTV 운영협의회 운영		
104.	CCTV 통합기반 인프라 구축		
105.	CCTV 통합관제센터 및 관제시스템 운영		
106.	CCTV 관련 업무별 민원처리 및 상황전파		
107.	CCTV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108.	유관기관 관제운영 업무협의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건축주(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조치 요청』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광 양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기간 : 2022. 9. 30. ~ 2022. 10. 20.(20일간)
4. 공고장소 : 광양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5.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건축주	반송주소	반송사유
광양읍 목성리 1057번지(1041-1 번지 일대)	가. 무단증축(건축법 제14조) - 1층 창고시설 13.2㎡ 나. 무단증축(건축법 제14조) - 1층 창고시설 52㎡ 다. 무단증축(건축법 제14조) - 1층 창고시설 12.9㎡	원상회복 조치	김*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 신길 6-3	폐문부재

↓ 뒷면 계속

6. 유의사항

44

- 위 내용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원상회복을 통보합니다.
-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061-797-31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